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433
--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7. 9.
제출자 : 달성군수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정민법 시행(2013.7.1.) 이후 금치산·한정치산에서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개정(2015.9.30.)하였음에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민법 시행 전(2013.7.1.) 금치산·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하여 경과규정을 두고자 함

3. 주요내용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235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법」 제10429호 부칙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4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(5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7. 7. 21. ~ 8. 10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235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12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같은 조 제2호의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235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235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12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같은 조 제2호의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.</u></p>

참고 1

관계법령(발췌)

□ 「민법」 제10429호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, 한정후견,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"금치산" 또는 "한정치산"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"성년후견" 또는 "한정후견"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